<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타카』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무진오토라이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무진오토라이프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 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재지	부산 연제구 고분로 242번길 15					
대 표 전 화		화	051-751-8286	051-751-8286 ч н к к х -			-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 화 번 호		네 및 호	점포 개발팀 010-4891-5595	대	丑	메	일	seller4989@gmail.com	



<제목 차례>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타카』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3. 공급 상품 등의 내역
- 별첨4. 가맹점 현장 점검표
- 별첨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 별첨6. 필수설비/집기 품목리스트
- 별첨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타카	부산 연제구 고분로 242번길 15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무진오토라 이프	2016.09.20	2017.01.01.	정현미	051-75	1-8286	-		
	법인등록번호	18111-1054731	사업자	등록번호	818	3-81-00642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0.01)	정현미/		부산광역시 연제고 고분로242번길 15				
(사용인) 임원	㈜무진	타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오토라이프		정현미	051-751-8286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타카』	-
상 호	『타카 <u>』 지역명</u> 점	가맹점 명
상 표	TACAR EF7	출원번호 : 4020240084822
(서비스표)	TACAR EH7H	출원번호 : 4020240084827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574,308	2,002,725	571,582	3,070,372	96,649	120,121
2022년	2,667,716	1,973,485	694,231	3,266,744	144,506	122,648
2023년	2,755,366	1,953,835	801,531	3,123,248	168,959	107,30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과려어브 이르		이 르	이 름	이 르	이 르	이 르	이르	이르	이르	현 직위	사업 경력				
한번역투 	VI =	E 411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현미	사내이사	2016.09.20 ~현재	㈜무진오토라이프 사내이사	업무총괄 회계자금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자	존속기간 만료일
TACAR EH7	가맹점운영	2024.05.09	4020240084822	주식회사 무진오토라이프	-
TACAR 타카	가맹점운영	2024.05.09	4020240084827	주식회사 무진오토라이프	_

①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②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타카』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예정

2.『타카』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무진오토라이프	타카	정현미	가맹사업 예정	부산광역시 연제고 고분로242번길 15

3.『타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타카	대분류	소분류				
년 년 ⁷ 년	기타 도소매	자동차 배터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타카』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_	-	_	-	-	
서울	-	-	-	ı	_	-	-	-	-	
부산	-	-	_	_	_	_	_	-	-	
대구	-	_	-	-	_	_	-	_	-	
인천	_	-	-	-	-	_	-	-	-	
광주	-	-	_	_	-	_	-	-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	_	_	ı	_	-	_	_	_	



세종	-	_	_	_	_	_	_	_	_
경기	-	-	-	-	-	-	-	-	-
강원	-	_	_	_	_	_	_	_	-
충북	ı	_	_	_	_	_	_	-	-
충남	-	_	_	_	_	_	-	_	-
전북	-	_	_	_	_	_	_	_	-
전남	ı	_	_	_	_	_	_	-	-
경북	-	_	_	_	_	_	-	_	-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타카』가맹점 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타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타카]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 ^인	평균 박(상한)	연간 매출 ⁹	평균 백(하한)	비고
71667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_	_
인천	-	-	-	ı	-	-	-	_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강원	_	-	_	-	_	-	_	_



충북	-	-	_	_	_	-	_	-
충남	-	-	-	-	-	-	-	-
전북	-	-	-	_	-	-	_	-
전남	-	-	-	-	-	-	-	-
경북	ı	-	-	_	-	-	_	-
경남	_	_	_	_	_	_	_	-
제주	-	-	-	-	-	-	_	-

[※] 전년도에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타카』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타카]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사직동 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24	051-558-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하나은행 인터 넷뱅킹]으로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홈페



이지 (https://www.kebhana.com)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무진오토라이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귀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는 예치해야할 가맹금액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① 귀하가 [타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 비용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초 가맹금>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금액 가맹금반환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한 대가	₩5,500	가맹사업 시작 후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비	가맹점 오픈 시 발생하는 경영지도 및 교육비	₩1,100	가맹점 오픈시 경영지도 및 교육 후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
기타비	초기 자동차 부품 수령비	₩2,200	가맹사업 시작 후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합 계	₩8,800		

※ 귀하가 『타카』 운영권을 기존 『타카』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의 가맹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전 반드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대가로 **금일백일십만원** (₩1,100,000)<부가세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삼백만원(₩3,000,000)<부가세요음>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내역

- ①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이행과 당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이나 손해배상액 등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삼백만원(\(\pmu3,000,000\))을 가맹계약 체결 당일 내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며 부족시 보충을 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귀하의 당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대금지급의무 등 가맹계약상의 당사에 대한 귀하의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맹계약서의 제37조상의 귀하의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가 완료된 시점에서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37조상의 의무를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에게 동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이행여부에 대한 실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후 정산내역서와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일천일백팔십만원(₩11,800,000) <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5,500,000



기타 가맹점 오픈 시 발생하는 경영지도 및 교육비	₩1,100,000
초도 자동차 부품 수령비	₩2,200,000
합 계	₩11,8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및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33㎡[10평]기준**, VAT포함)

내용	지급대상	금액	면적금액 (3.3㎡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직접 또는 협력업체	17,000	1,700	공사 전 50%지급 준공 후 50% 지급	협력업체 주문 계약전	점포 상황에 따라 상이함
사인	직접 또는 협력업체	5,000	500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계약전	점포 상황에 따라 상이함
진열대	직접 또는 협력업체	2,000	2,000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계약전	점포 상황에 따라 상이함
초도물품비	직접 또는 협력업체	2,000	2,000	계약일	오픈 전 5일 이내	점포 상황에 따라 상이함
냉난방기	직접 또는 협력업체	5,000	500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계약전	점포 상황에 따라 상이함
앱 프로그램	직접 또는 협력업체	1,000	100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계약전	-
합계		32,000	3,200			

※ 비고

- ① 인테리어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은 계약금 및 잔금 등 인테리어업체와 귀하가 협의한 날짜에 결제하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50%입금 (부가세 제외)
 - 2. 잔금: 오픈세팅완료 후 총액의 50%입금 (부가세 제외)
- ② 해당 금액표시와 합계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으므로 가맹점 점포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별도사항



철거, 폴딩도어, 추가 간판, 전기증설, 가스, 냉난방기, 소방, 화장실, 어닝, CCTV, POS, 인허가, 테라스 등의 시공은 별도금액으로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초도물품비

- ① 귀하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도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초도 물품비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를 가맹본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금액은 점포의 면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초도물품의 경우 개봉을 하는 즉시로부터 물품의 상태가 급격히 변질되어 재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을 개봉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영업개시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물품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당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품목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와 최종 합의 후 가맹희망자 최종결정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의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게 되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 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점포 개발팀 051-751-8286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채용기준	계약ㆍ채용 조건
가맹점사업자	제한이 없음	교육이수자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킨 사실 이 없을 것. ·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피고용인	제한이 없음	용모단정	· 만 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맹금 납부의 또 다른 규정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귀하께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로열티	당사	1.1%	매월 1일	없음	매출 발생 후
광고료		실비	광고 실시 전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후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행사 실시 전	행사 실시 전	행사 실시 후
교육훈련비 (수시교육)	-1.1	실비			
교육훈련비 (특별교육)	당사	실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반환	교육 개시 후
교육훈련비 (재교육비)		실비			
특별 경영지도비		실비	경영지도 개시 전	경영지도 개시 전 전액반환	경영지도 개시 후
시설, 각종 기기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또는 직접 시공	범위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후
점포환경	협력업체	공사범위에 따라	공사 시작 전		



개선비용	또는 직접 시공	당사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당사	연 15%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가맹본부가 시공한 시설, 기기 등에 관하여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을"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하자보수 기간이 초과 시 별도의 수리비 및 인권비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② 광고비의 분담은 광고와 홍보로 나누어 분담합니다.
- ②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국단위의 상품광고 및 가맹점모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되,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50%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모집광고만의 경우는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담액은 각 가맹점의 광고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총매출액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 ⑤ 귀하께서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단독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등의 제작은 『타카』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귀하의 비용으로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귀하는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당사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	----	----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 별	문의 : 점포 개발팀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분기 별	(051-751-8286) ※ 사정에 따라 변경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분기 별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가맹계약 당시 지급한 가맹이행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타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적 자격요 건이 구비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 전 반드시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는 양 수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에 대한 대가로 금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금삼백만원 (₩3,000,000)<부가세없음>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브랜드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의 각 항의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 시스템 및 Know-how 등 가맹본부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가맹본부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000원씩[매장면적(㎡)×지체일수×1,000원] 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키오스크 시스템,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타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타카』가맹사업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 점내 판매 물품의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타카』가맹사업 내용이 **한국표 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에 해당**되어 작성을 생략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및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타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당사는 [타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 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역은 상담 시 제공할 것입니다.
- ②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법령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귀하가 다음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3] 공급상품 등의 내역 참조	[별첨3] 공급상품 등의 내역 참조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로인 비중 남자	가맹본부	계열회사
자동차부품 소매업 (자동차 배터리, 부품 교체 등)	타카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원칙: 해당 가맹점 위치에서 반경 500m 지역	
예외: 가맹계약서 상에 별도로 영업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는 경우 행정구역상 동(洞)단위로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영업지역 변경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 작	함. 합의를 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게 서면 통지 → 가맹	이내에 영업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점사업자 합의 → 영	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 가능)

-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 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타카』브랜 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타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의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타카』가맹사업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다음 가맹계약서상의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①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5조제1항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 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 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⑥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①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등 금전지급의무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에 의거한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의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자재 등 공급의 중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및 판촉의 약정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36조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 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
○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앱 프로그램 사용을 거부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가치 침해 내지 다른 가맹점과 당사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제36조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 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5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6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36조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 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6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6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서면 합의 및 관련법령 개정, 제정 또는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는 양수인의 자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출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가능 여부 통지 → 양 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점포 개발팀 051-751-8286

- ① 귀하는 제3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당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상의 귀하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2. 직계 존 · 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 3. 동업자간의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단 최초가맹계약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경우에 한한다.
- 4.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 5.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 6.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승인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제2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사의 승인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3항의 승인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게 완납하고 교육 및 인·허가 사항 등의 가맹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당사는 양도·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 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동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양수인 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최초 가맹비를 면제합니다.
- ⑥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 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께서 대표자의 명의변경 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승인의 요청 시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⑧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수·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자의 손실 및 법정소 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 또는 위탁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운영의 대리 행사나 위탁은 원칙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 또는 대리행사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을 포함)이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성년후견 개시시 그 상속인또는 성년후견인은 상속 개시일 또는 후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 자의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당사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양수도의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을 상속절차에 준용합니다.
- ④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의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당사의 승인을 얻어 상속 또는 후견개시를 한 경우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하되,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교육은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귀하(직계가족을 포함합니다) 또는 제3 자의 명의로 당사의『타카』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자동차부품 소매업 (자동차 배터리, 부품 교체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점포 개발팀 051-751-828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 당사는『타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본부와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일8시간,	문의: 당사 점포 개발팀
협의 조정 가능	월 25일 이상 (단, 2월은 20일) 개점합니다.	051-751-8286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영업시간 조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	-------	------------	-----	----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 시	
접객 및 교육상태	고객센터 연락처 명시 및 유선상 고객응대방법 점검	분기 별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유선상 통화 → 친절 도 및 대응기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 시	문의: 점포 개발팀 - 051-751-8286
회계처리 가맹본부 지침사항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 및 재고, 상품관리, 당사 지침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 시	001 731 0200
기타	마케팅 및 서비스 운영체계 컨설팅, 본사 직급 교육 실행 및 공동 매뉴얼 운영 관리	필요 시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타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 ① 귀하는『타카』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지역본부 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행사 계획	-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공고→가맹점주들의 고 상품광고+가맹점모 행사동의→ 행사 시작		행사 (전: - 전체 <i>기</i> 자의 509	Day 이벤트 (전국행사) 가맹점사업 50%이상 동		
	가맹점 모집광고	별도협의		경우 조정 가능함)	의가 있 시행	l는 경우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자의 709	행사 맹점사업 %이상 동 는 경우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자료는 물론 본 계약에 의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1천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③ 본 계약의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벌을 지급하되 그 위약벌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에는 그 영업 기간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1년간 평균 월매출액(부가세 포함) × 3개월분의 금액]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①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내외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33㎡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상담 문의	-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즉시	[12P~15p] 참조
시장분석 및 점포개발	유동인구분석, 거주자분포현황, 업종분석, 경쟁업소분석, 지역분석, 상권확장분석	7일	
최종 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5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납입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가맹 계약서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투자비 산출	- 인테리어/설비공사비 /집기공사설비 등 완료시 지급 • 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50% 입금 • 잔 금: 오픈 세팅 완료후 총액의 50%입금 • 정 산: 오픈 7일 후 가감액 정산 - 초도물품 등	1일	



인테리어 시공	-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환풍기 등	21일	생략가능
개점 전 교육	- 운영교육, 위생교육, 이론교육, 서비스교육	3일	
오픈 리허설	- 최종점검 및 리허설	1~3일	
오픈	- 개점 및 영업개시	-	

②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① 당사와 귀하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실시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 여 점포환경개 선을 전 점우에 는 점포환경개 선의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 쳐 가 맹 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2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 본부 요청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통상적인 가맹점 경영지도 외 가맹점사업자가 특별 경영지도 요청시 경영지도담당자 (1일 1인 기준 실비청구)	문의: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타카』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교육.훈련종류	이수여부	최소시간	비용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개점 전 교육	강제	6시간	1,100		- 개점지연 - 계약해지
수시교육	필요 시	1일 기준	실비	- 가맹점사업자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특별교육	필요 시	1일 기준	실비	- 직원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재교육	필요 시	1일 기준	실비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 ① 개점 전 교육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의 교육, 가맹점 운영 규칙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하며, 귀하께서는 귀하나 귀하의 피고용인을 위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점 전 교육 과정 중에는『타카』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당사가 정한 장소에서의 소정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② 수시교육은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③ 특별교육이란 신서비스 개발 등 필요에 의하여 귀하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당사에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타카』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1의 표와 같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원 등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가맹계약서 제19조에 따라 가맹점 개점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당사에 의해 가맹점 개점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이 없습니다.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_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점포 개발팀(051-751-828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②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운	!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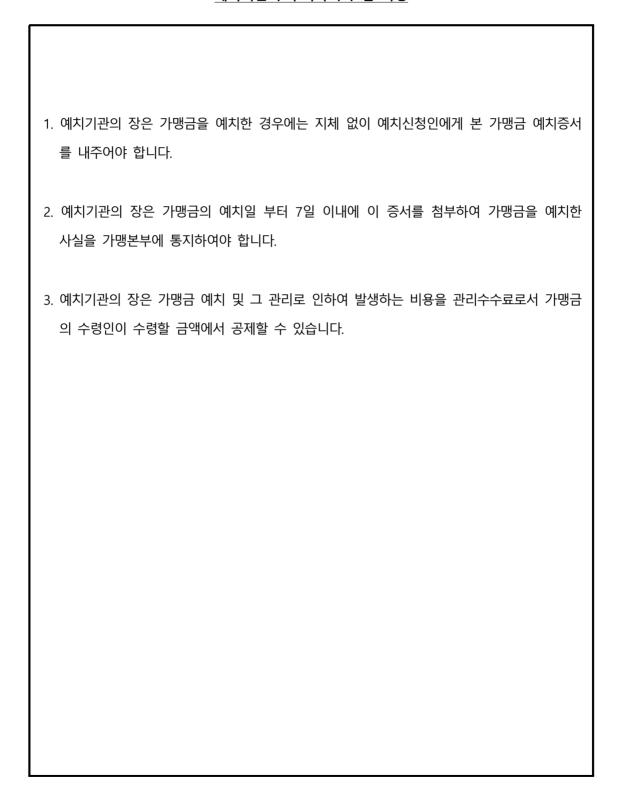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별첨 3] 공급 상품 등의 내역

연번	상품명명	공급가격(단위:원)	비고
1	로케트 배터리80L	76,280(1ea)	수시변동
2	로케트 배터리90R	82,280(1ea)	수시변동
3	전라이닝 포터2	20,540(1ea)	수시변동
4	전라이닝 YF/K7/스포티지R	20,830(1ea)	수시변동
5	엔진오일5000K	57,001(1ea)	수시변동
6	항균필터112(YF/K5/K7)	10,821(1ea)	수시변동
7	향균필터107(에쿠스/제네시스G80)	10,821(1ea)	수시변동
8	수입차 오일필터/에어크리너	제공가	수시변동



[별첨4] 가맹점 현장 점검표

가맹점 현장 점검표

* 가맹점명 :

* 점검일 : 년 월 일

* 점검인 :

구분 관리항목				관리상태			비고
	근닉 6 ㅋ	매우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우수	-1-
1	복장(청결, 착용)						
2	장비관리상태(청결)						
3	장비보유(장비구축)						
4	가맹점유지상태(청결)						
5	청소상태(품질관리)						
6	검수시 고객응대태도						
7	서비스 시간(시행력)						
8	레포트 작성(절차준수)						
9	고객지시사항 이행(서비스)						
10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11	A/S 처리(사후관리)						
12	레포트 관리(품질관리)						
13	재고관리(입/출고관리)						
14	청소 방법(품질관리)						
15	A/S 발생횟수(품질관리)	5회	4회	3회	2회	1회	
	점수						

- * 매우불량 : 2점 , 불량 : 4점, 보통 : 6점, 우수 : 8점, 매우우수 : 10점
- * 점수 총합을 150점으로 하며 평균점인 75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가맹점의 경우 주문 또는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 소정의 패널티와 함께 본사 집체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 * 점검표는 본사와 가맹점 상호가 각각 확인 후 소지하도록 한다.

확인자 서명 : (연	<u>기</u>)
-------------	----------	---



[별첨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명	주소	전화번호



[별첨6] 필수설비/집기 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주식회사 무진도 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ር 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리	귀사의 정보공개 !으로 유출 또는	서를 수령히 제3자에게	ト는 경우 누설하지	에 귀사! 않을 경	의 영업비밀 선임과, 이를	빌 또는 사업
1. 정보공개서를 제공 2. 정보공개서를 제공		년	월	일	시	
3. 정보공개서를 제공 4.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호 5. 가맹본부 및 가맹	- · - 号 : - : 번호 :	ᄄ느 기며	I날이			
5. 기정군구 및 기정· 	의당사의 시당 	포는 기정	당된건			
가맹본부 : 주식회사	무진오토라이프	수 령	자 :			(인)
대표이사 :	(인)	주민등록번호 : -				